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8074 취등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4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대한 취득세 5,250,260원 및 등록세 13,191,190원, B 차량에 대한 취득세 1,893,500원 및 등록세 4,757,440원, C 차량에 대한 취득세 3,739,290원 및 등록세 9,393,61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D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68,790원 및 등록세 11,226,400원, E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46,300원 및 등록세 11,173,800원, F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55,990원 및 등록세 17,725,900원, G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20,480원 및 등록세 17,642,850원, H 차량에 대한 취득세 2,791,470원 및 등록세 7,013,990원, I 차량에 대한 취득세 2,604,620원 및 등록세 6,544,54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기재하였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였는데,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에서 다시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고,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4행 말미에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원고가 K에게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는 업무만을 위임하였고,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는 리스이용자들의 업무로서 리스이용자들이 K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등록에는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K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와 리스이용자들 사이에는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납부한 취·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록세의 추후 정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과소신고사실 및 관련서류의 위조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인식하고 있었고, K 등이 제출한 서류 등을 보고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10년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규율목적과 보호법익, 요건 등을 달리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사실 및 관련서류의 위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고려할 것으로 원고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납세의무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취·등록세 납부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그 후 곧바로 취·등록세 납부명의자인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림으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 5년을 도과시켰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적법한 취·등록세 신고 내지 비과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당 공무원이 K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의 취·등록세 납부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담당 공무원이 K 등의 취·등록세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한 세액대로 취·등록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최초 리스이용자들을 상대로 추가 부담하게 된 취·등록세 상당 금원의 반환을 구할 절차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할 대상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와 리스이용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의 문제일 뿐 과세관청에 대하여 주장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위적 청구취지로서 추가하면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이 사건 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